

2024년 제12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월 29일

여 수 시 장

김기호



여수시 규칙 제849호

붙임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 규칙 제849호

##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타 규정 개정에 따라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3조제2항제3호, 제3조제3항, 제6조제2항의 국·소장을 국·소·단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3조(결재권의 배분원칙) 시장, 부시장, 국·소장, 담당관·과·소장,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.</p> <p>② 부시장의 전결사항</p> <p>3. 국·소장, 담당관·과·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·감독</p> <p>③ 국·소장의 전결사항</p> <p>2. 국·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</p> <p>제6조(전결사항의 합의)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, 다른 국·소장 또는 담당관·과·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[별표] 사무전결처리 사항</p>	<p>제3조(결재권의 배분원칙) 시장, 부시장, 국·소·단장, 담당관·과·소장,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.</p> <p>② 부시장의 전결사항</p> <p>3. 국·소·단장, 담당관·과·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·감독</p> <p>③ 국·소·단장의 전결사항</p> <p>2. 국·소·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</p> <p>제6조(전결사항의 합의)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, 다른 국·소·단장 또는 담당관·과·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[별표] 사무전결처리 사항(개정)</p>